

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내규

2024. 3. 1. 제정
2024. 9. 1 일부개정
<학생지원팀>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의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6조에서 규정한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배정) 장학금 배정은 대학(부) 재학생(특기자 제외) 등록금 비율로 정한다.

제3조 (대상 및 선발기준)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소속 대학(부)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.
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성적 기준은 선발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 (장학금액 및 지급기간)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.
1. 성적최우수A: 수업료 전액 지급
2. 성적우수B: 수업료의 50% 지급
3. 성적우수C: 수업료의 30% 지급
② 해당 장학금은 선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5조 (자격제한) ① 취득학점기준(15학점 이상, 4학년 1학기 이후는 12학점 이상)에 미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4. 9. 1.>
② 장학금 지급은 선발 당해학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학기 재입학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4. 9. 1.>
③ 복수전공자 중 복수전공 진입학기에는 직전학기 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④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기타)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총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 개정)
- (경과조치) 제5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